

의안번호	2215264
의 퇴 인	박해철의원
회 답 일	2026.2.11.
추 계 번호	25B7199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 9,600만원 (연평균 1,92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	현행(A)	96	-	-	-	-	96
	개정안(B)	96	-	-	96	-	192
	추가재정소요(B-A)						96

주: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, 향후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9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)	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·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·보조금·융자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○	·“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”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9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)	×	·제3호 - 개정안에 따라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방식으로 보조·용자가 추가될 경우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 다양화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, 기상청에 따르면 보조·용자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가 실시된 사례가 없어 현시점에서 보조·용자 방식 도입으로 인한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를 알 수 없고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4조에 따라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단축될 경우, 실태조사 수행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로 가정하며, 유사사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“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” 수립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비를 준용함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에 「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」를 수행하였으며, 해당 연구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9,600만원임
 - 연구용역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법에 따른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

있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2023년에 「제3차 기상산업진흥 수정기본계획(2023~2027)」이 수립되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「제4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(2028~2030)」 및 「제5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(2031~2033)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각각 2027년과 2030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함
- 추계결과,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 9,600만원 (연평균 1,92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	현행(A)	96	-	-	-	-	96
	개정안(B)	96	-	-	96	-	192
	추가재정소요(B-A)						9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, 향후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